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 시 조치 의무화〉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310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광희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2. 9.

다. 회 부 일 : 2024. 1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에 대한 조치 여부 결정이 학교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경우에 따라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에 대해 일정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1항).

Ⅲ. 검토 의견

개정안은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 시 학교장이 일정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 ----- ----- ----- ----- ----- ----- ----- ----- ----- -----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학교폭력 접수 초기 사실확인을 거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교내 전담기구가 사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자체해결 불가 사안으로 분류함. 자체해결 불가 사안의 경우 교육지원청에 소재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를 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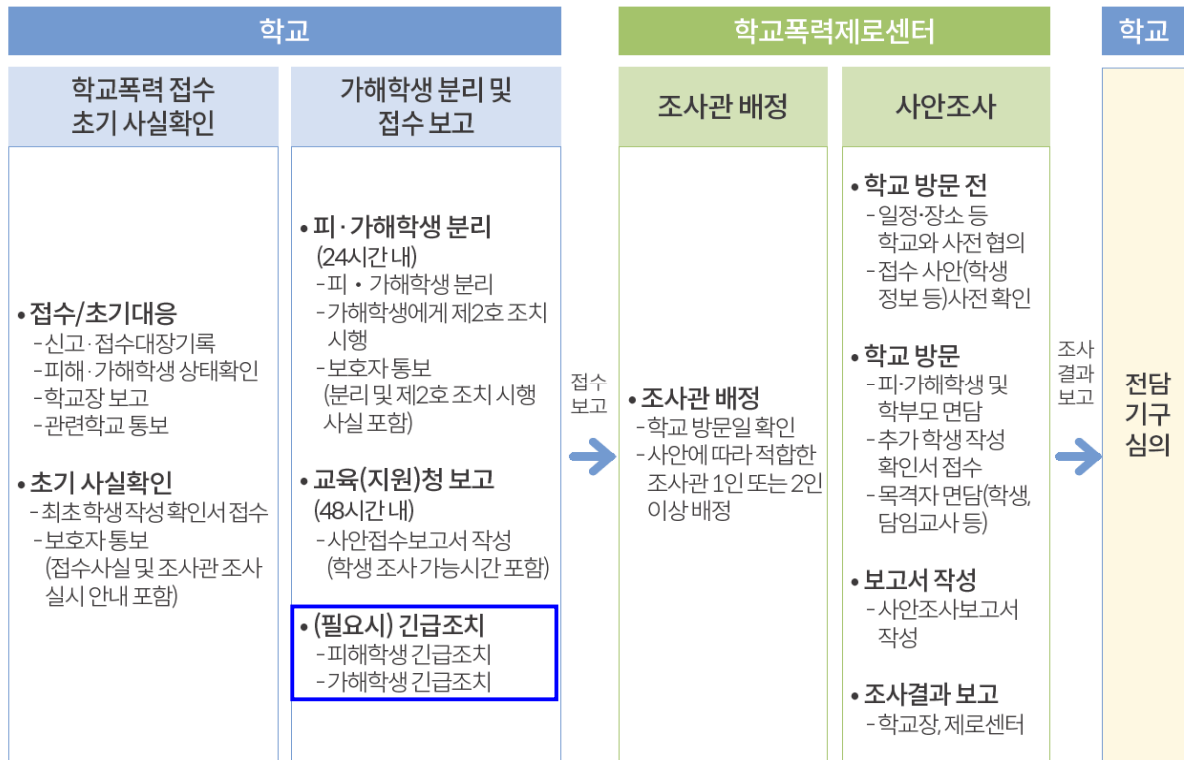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16조제1항¹⁾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및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직접 보호조치 가운데 학급교체를 제외한 나머지 조치를 사안처리 초기 단계에 할 수 있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일부 발췌 >



자료: 교육부, 「2024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그러나, 현행 긴급보호 규정 하에서는 긴급조치 여부의 결정이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을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긴급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여 사안처리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당초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에 대해 즉시 조치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요청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긴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던 것이므로²⁾³⁾,

분리조치라는 1차적인 긴급조치가 이미 긴급보호 요청에 대해 즉시 조치할 의무가 전혀 없는 상황에 대응하여 도입된 것임을 고려할 때 추가 긴급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는 것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

[법률 제16441호] (구) 학교폭력예방법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u>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u>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u>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u>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 6. (생략)

3) 의안번호 2104594, 2020.10.21., 이탄회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中

동일 학교 내의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과 같은 사안은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할 의무가 전혀 없는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피해학생과 가해자(교사 포함)를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이후 피해학생이 요청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었더라도 실제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된 비율이 최근 3년간 매년 10% 이상이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율도 2023년에 전체의 25% 가량을 차지함을 고려할 때,

< 2021~2023학년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

(단위: 건, %)

학년도	심의건수	피해학생 조치 없음	학교 폭력 아님
2023학년도	23,579건	5,926건 (25.13%)	3,763건 (15.96%)
2022학년도	21,565건	4,442건 (20.6%)	2,913건 (13.51%)
2021학년도	15,653건	2,656건 (16.97%)	1,669건 (10.66%)

자료: 교육부

선제적 긴급조치가 실제로는 가해자가 아닌 피신고자에게도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면서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고, 긴급조치가 불필요한 사안에도 일률적으로 시행될 경우 한정된 행정력과 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될 가능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확인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신고 사안의 경우에도 긴급조치를 부과하게 되어, 조치 악용⁴⁾으로 인한 분쟁 발생⁵⁾,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므로, 현행과 같이

4) △ 피해 학생 보호조치 2호(일시보호)를 이용하여 학생이 학교를 나오지 않고도 출석 인정을 받으려는 수단으로 사용, △ 피해 학생 보호조치 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이용하여 심의 전 병원비 일체 요구, △ 6호(그 밖의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근거로 학교 급교체 등 무리한 요구

5)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내려질 경우 긴급조치를 근거로 받은 치료비 지원에 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 시 학교장이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재량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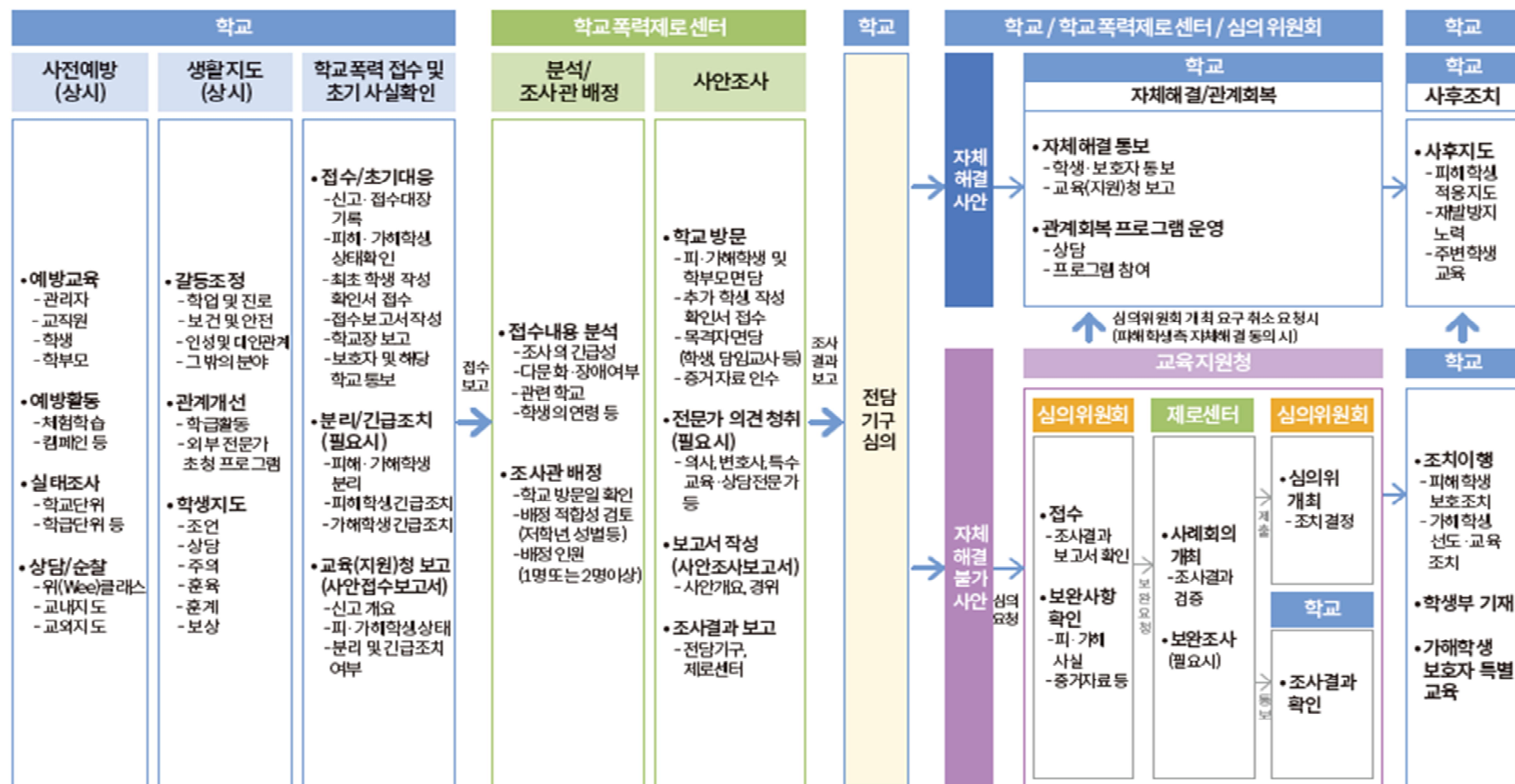
서울시 등 시·도교육청⁶⁾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내렸을 시 행정력 낭비와 민원을 초래할 수 있고, 이후 구상권 청구 등을 우려하여 가해자 측에서도 피해학생을 가해자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학생의 보호보다는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개정안의 선제적 의무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감정적, 보복성 신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4

한 분쟁이 발생하여 학교의 업무 부담을 가중할 수 있음
6) 서울, 광주, 전남, 충북, 경기, 경북, 세종, 인천 교육청

참고자료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자료: 교육부